# (가칭)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980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우리사회의 일상적 성차별·성폭력 문제는 오랜 남성 중심 역사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, 성평등한 시민의식 확립을 위해 여성의 역시를 올바르게 이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
- 나. 조선시대 여성의 역사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(가칭)서울 여성역사샘터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구심점 역할을 통해 '성평등 서울' 실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시설로서,
- 다. 여성사 연구, 도서관 운영, 교육·행사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을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 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○ 위치 : 종로구 창신동 7-26 (시유지)

○ 규모 : 대지 968.9*m*² / 연면적 763*m*²(자하3/지상2층)

- A동(지하1·지상1, 총 376m²), B동(지하3·지상2, 총 387m²)

※ 근린공원(1,303.8m²), 비우당(28.8m²), 임야(670.98m²) 사용 예정

# ○ 공간구성(안)

구분		면적(m²)	용도
A동	자하]층	222.61	여성사 책방(여성사 서적 비치·열람, 여성사 교육프로그램)
	지상]층	153.44	어린이 책방(어린이 유아 서적 비치, 자유롭고 편안한 열람공간)
B동	지상2층	140.81	여성사 전시코너, 안내데스크, 카페(주민공동시설)
비우당		28.8	기족 공동열람실(평시), 소규모 행사 공간
근린공원 등		1,303.8	가족참여 문화(체육)행사 공간

○ 준공일 : 2019. 8월말(예정)

#### 나. 위탁내용

○ 위탁사무 : (가칭)서울여성역사샊터 운영

○ 위탁기간 : 2020. 1월 ~ 2022. 12월(3년간)

○ 위탁유형 : 시설위탁(예산지원형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적격자 심의)

○ 조직 및 운영(안)

관장(1명) 운영 총괄

#### 여성사 연구팀(3명)

- · 도서 확보 및 관리
- · 여성역사 자료 축적·연구 및 교육
- · 여성사 지역탐방코스 개발 등

#### 운영팀(2명)

- · 가족·어린이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· 주민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
- · 시설 유지·관리

### ○ 위탁사무 내용

- (가칭)서울여성역사샊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(가칭)서울여성역사샘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
- (가칭)서울여성역사샘터 도서 확보(구입, 기증) 및 관리, 대출, 열람 등
- 서울시 여성역사 관련 자료 축적·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족·어린이 프로그램 운영
-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
- 그 밖에 여성의 역사. 성평등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소요예산('20년) : 491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#### 다. 추진근거

- ○「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」제29조. 제45조
- ○「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제3조, 제25조
- (가칭)서울여성역사샘터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('19. 6. 21)
- 2019년 제4차 「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」심의결과(적정) 통보 ('19. 7. 17. 조직담당관-9257)

#### 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(가칭)서울여성역사샘터의 주기능인 여성역사 관련 도서 수집· 관리, 기록물과 자료의 발굴·축적·연구, 여성역사 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, 지역활성화 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이 필요함
- 서울시에서 (가칭)서울여성역사샘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 바, 신규 공무원 채용보다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예산 절감 가능

# 3. 참고사항

# 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

제29조(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

제45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

### ○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3조(기본원칙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
- 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- 1~5호 생략
- 6.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- 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 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편성 추진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김성룡(☎2133-5008)